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1.

발 의 자 : 조지연 · 박덕흠 · 김은혜
김장겸 · 고동진 · 최수진
신성범 · 이인선 · 박준태
이종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,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·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퇴직자 등이 기존에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,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·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).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.

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접근 권한이 변경·말소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현황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7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8조제3항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아니한 자

12의2. 제28조제4항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접근 권한이 변경·말소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현황을 보관·관리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 ① ·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8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접근 권한이 변경·말소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현황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</u>
제75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2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75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제28조제3항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</u>

